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2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 : 엄태영 · 이종배 · 이달희

박형수 • 유상범 • 권성동

조 국・서천호・강명구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 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개설된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 또는 보건진료 전 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5항 중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를 "군 보건소, 읍·면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건진료소

제3장의 제목 중 "전담공무원"을 "전담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	4. "보건진료소"란 의료 취약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역에서 공중보건의 또는 보건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	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			
<u>한다.</u>			
제5조(종사명령 등) ① ~ ④ (생	제5조(종사명령 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5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			
에는 군 보건소와 읍 • 면의 보	<u>군 보건소, 읍·면의 보건</u>		
<u>건지소</u> 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지소와 보건진료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		
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관 및 배치시설) ①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 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생략)

<신 설>

- 2. ~ 5. (생략)
- ② (생략)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저 전담공무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저 ① (생 략)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 건진료소장은 <u>보건진료 전담공</u>
무원으로 보한다.

③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1의2. 보건진료소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에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③ (현행과 같음)
세15조의2(보건의료 취약지역 방
문진료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

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

의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